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2024. 10. .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경과

- 제안일자 : 2024. 10. 10.
- 제출자 : 남양주시장

2. 제안이유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후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완료에 따라 사업비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 ----- 체육과

3. 주요내용

가) 기존 사업개요

- 위치 : 퇴계원읍 퇴계원리 49-2 (면적 : 15,517㎡)
- 시설계획 : 부지면적 15,517㎡(축구장(100m×64m), 다목적구장(608㎡), 관람석(120㎡), 화장실(50㎡), 관리사무소(40㎡), 주차장(228.3㎡, 10대) 등
- 사업기간 : 2018. 1. ~ 2020. 12.
- 소요예산 : 72.2억원

(단위 :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금액	7,220	3,160	3,410	220	430

나) 사업 변경내역

- 변경사유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완료에 따라 사업비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변경내역

구 분	기존(2019년)	변경(2024년)
위치	퇴계원읍 퇴계원리 49-2	
대지 면적	15,517㎡	17,736㎡
규모	축구장(100m×64m), 다목적구장(608㎡), 관람석(120㎡), 화장실(50㎡), 관리사무소(40㎡), 주차장(228.3㎡, 10대) 등	축구장(100m×64m), 진입도로(3,566㎡) 관람석(82㎡), 화장실(80㎡), 주차장 (1,223㎡, 54대) 등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4,060, 토지비 3,160 (공사비 3,410, 설계비 220, 기타 420)	사업비 6,560, 토지비 5,700 (공사비 5,910, 설계비 330, 기타 320)

4. 검토의견

본 변경안은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추가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예산보다 30%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거점 운동장이 없는 퇴계원읍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조성 시 육상트랙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과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충, 녹지공간 설계 등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

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